

#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

(의안번호 제793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8    | 고 성 군 수       |
| 나. 회 부 일 자 : 2003. 3. 19       |               |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3. 26 |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 2. 제정이유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인재육성기금 조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출연(안 제3조)
- 나. 군 출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함(안 제5조)
- 다.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안 제6조)
- 라. 출연금 운영상황 지도·감독(안 제8조)
- 마. 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안 제9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 지역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므로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발전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

으로 군이 행정적·재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서 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성군 교육발전 위원회의 설립과 세부단위 사업별 기금운용 계획의 적정성, 군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군이 부담해야될 예산의 규모, 정부보조, 기타부담금 등 재원의 종류, 재원 조달 계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군 인제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에서 먼저 교육발전 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 답 : 당초 3월말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4월초 등기완료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의회 의사 일정이 3월에 열리므로써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음.  
조례가 먼저 제정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코자할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다소간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현 시점에서 교육발전 위원회의 기금 확보액은?
- 답 : 약 8,020만원 정도임.
- 문 : 본 조례를 부결 또는 보류시 법인설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 답 : 부결시 많은 영향이 미칠것이며,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것임.  
순서가 바꿨더라도 고성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 : 법인해체시 기금처리 방향은?

● 답 : 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안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3.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